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9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주요 내용별 검토	9
3. 관계기관 의견	15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과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초기 긴급 대응 지원,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11장 감염병위기대응기금</u> <u>제73조의2(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국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제73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금</u> <u>2.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입금</u> <u>3. 제73조의9제2항 후단에 따른 보전금</u>

<신 설>

<신 설>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
금

5. 정부의 출연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제7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
리·운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
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세
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
우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신 설>

지원

2.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
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 조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
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위기
예측 등 조사·연구

4.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
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중보
건위기 대응·협력

5.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강·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지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
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감염병위기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73조의5(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

<신 설>

<신 설>

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3조의7(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의

<신 설>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
징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의8(재원의 적립) ① 정부
는 매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73조의4제1호의 용도를 위하
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
은 매년 해당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적 적립액
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금
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
액을 제73조의4제2호부터 제8
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다.

<신 설>

제73조의9(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
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
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이

<u><신 설></u> <u>제11장 보칙</u> <u>제12장 벌칙</u>	<u>경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 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u> <u>제73조의10(감독 및 명령) 질병 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 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u>1.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기 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사무</u> <u>2. 제73조의7제1항에 따라 출 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 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대행 업무</u> <u>제12장 보칙</u> <u>제13장 벌칙</u>
---	---

2. 주요 내용별 검토

- 최근 기후 변화, 글로벌 이동량 증가 및 항생제 내성 문제 등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메르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과 백일해,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등 재출현 감염병 및 해외 여행 활성화로 인한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의 유입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복합적인 발생 추이가 나타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23. 8. 31., 제2급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신고 환자수를 제외한 제2급 감염병 발생 환자수의 경우 2023년 92,650명에서 2024년 152,586명으로 64.7%가 증가하였고, 백일해 환자 수는 2023년 292명에서 2024년 48,048명(16,354.8%)으로 대폭 증가하였음.¹⁾

- 이에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²⁾과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 등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 자원 조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 질병관리청,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 p.4 참조

2) < 국내 감염병 피해 발생 규모 >

감염병	국내 유행기간	발생규모 (명)	
		국내	
		확진자	사망자
사스	3개월 (2003.3~5월)	3	0
신종플루	12개월 (2009.5~2010.4월)	15,160	260
메르스	8개월 (2015.5~12월)	186	38
코로나19	3년 7개월 (2020.1월~2023.8월*)	34,572,554	35,605

* 코로나19 제4급감염병 전환(23.8.31.)

** 자료: 질병관리청

□ 이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WHO 합동외부평가³⁾에서는 글로벌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백신 및 치료제 비축 포함)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6개 사항을 권고한 바 있음.

- ①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범정부적 조정, 부문 간 전략 기획 및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갱신하여 모든 수준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이 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 ③ 글로벌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백신 및 치료제 비축 포함)를 구축한다.
- ④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에 반영한다.
- 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 ⑥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와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수준(기술지원 및 공적 개발원조 포함)을 높인다.

□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예산에 비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설치될 경우 기금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 초기대응이 가능하며 재난 확산 방지 및 후속 재정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감염병 위기 초기

3)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 2025. 9. 2.

- WHO 합동외부평가단(WHO 6명, 프랑스 1명, 호주 1명, 핀란드 1명, 아르헨티나 1명, 싱가포르 2명, 중국 1명, 일본 1명 등 총 14명)은 2025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일주일 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함.

긴급 재원 편성·집행으로 검역·방역 인력 확보, 진단확대,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가동, 격리지원 등 핵심 자원을 즉각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먼저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재원은 출국납부금과 그 적립금, 정부 예산 보전금, 기금 운용 수익금, 출연금 및 예수금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재원은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활용하려는 것임.

참고로,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던 기금인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 권고('24. 5월)를 받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 국제질병퇴치기금 >

○ 개요

-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씩(‘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퇴치 지원 기금(근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연혁

- 2005년, UN 정상회의에서 ‘항공권 연대기금’을 포함한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을 촉구하는 ‘뉴욕 선언문’ 채택
- 2007년, 한국정부는 ‘혁신적 개발 재원에 관한 리딩그룹’ 의장직 수임, 혁신적 개발 재원의 일환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도입
-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시행에 따라 기금화
- 2025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법률안 시행

○ 기금 폐지경과

(폐지방안 발표) “해외 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간 관련성 미흡” 사유 출국
납부금 정비(폐지) 방안 발표('24.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

(폐지 권고) 국제질병퇴치기금(주채원 : 출국납부금) 폐지 권고('24. 5월, 기금준치평가) →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회 통과('24.12월), 폐지('25.1.1일 시행)

※ (출국납부금) 외교부국제질병퇴치기금 1천원 폐지, 문체부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 → 7천원

□ 개정안에서 기금 조성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제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지원(제1호), 신종 감염병·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 조성(제2호), 조사·연구(제3호),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협력(제4호) 및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강·감염병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제5호) 등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은 현재 질병관리청이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기금의 용도 관련 사업 현황(안)(2026년) >

(단위: 백만원)

집행목적	사업명	회계/기금	'26년 예산
계			14,098
방역·의료 물품 비축(제2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비축의약품 관리 운영)	일반	79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비축의약품 구입)	일반	2,47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중앙방역비축물품)	일반	3,746
조사연구(제3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공중보건 위기대응 정책연구)	일반	248
국제공중보건위 기 대응(제4호)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대응(ODA)	일반	3,070
여행자 건강 모니터링(제5호)	검역관리(검역시스템 구축 운영)	일반	2,860
	검역관리(공항만 오하수 감시)	일반	906

* 자료: 질병관리청

□ 연간 출국납부금 규모는 약 410억원(최근 3년 평균 출국자 수 ×1,000원)으로 기금 적립 규모는 약 1,000~2,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임.

2020년 코로나19 대응시 백신도입에 1,839억 재정을 사용한 바, 기금 규모 면에서 코로나 19와 유사한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초기 긴급 대응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출·입국자 규모 >

(단위 : 천명)

연도별	계	입국자	출국자
계	290,403	154,313	136,090
'21년	5,779	3,462	2,317
'22년	21,927	12,212	9,715
'23년	72,670	38,717	33,953
'24년	96,074	50,666	45,408
'25년	103,046	54,010	49,036

* 자료: 질병관리청(법무부 통계시스템)

□ 참고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질병관리청 소관 재정지출은 총 25조 4,978억원으로, 백신도입 8조 4,144억원(33.0%), 치료제 3조 1,777억원(12.5%), 예방접종 실시 2조 203억원(7.9%) 방역대응(진단검사) 5조 365억원(19.8%), 방역대응(생활지원·유급휴가비) 3조 7,880억원(14.9%) 등이고 본예산, 추경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 코로나19 대응 예산 투입 현황('20~'25년) >

(단위 :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본 예산	추경	예비비	본 예산	추경	예비비	본 예산	추경	예비비	본 예산	본 예산	예비비	본 예산		
합 계	354	6,290	7,174	1,281	59,565	25,141	49,313	72,012	3,202	18,910	6,108	3,268	2,360	254,978	
• 코로나19 백신 도입	-	1,839	1,723	-	38,721	8,571	26,002	-	-	2,151	3,488	-	1,649	84,144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	-	-	-	471	4,012	3,933	14,452	-	3,843	1,798	3,268	-	31,777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803	9	-	5,259	3,656	6,640	-	-	2,408	756	-	672	20,203	
• 코로나19 방역 대응	349	3,392	5,325	1,108	15,114	8,810	12,561	57,467	3,202	10,506	64	-	39	117,937	
• 연구 개발	-	256	10	172	-	92	168	93	-	-	-	-		791	
• 기타(대국민 홍보 등)	5	-	107	1	-	-	9	-	-	2	2	-		126	

* 자료: 질병관리청

□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금 설치 근거와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해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4)에 따라 동법 별표2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5)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박만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4)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률안」(의안번호 제15289호)이 발의되었으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동 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관계기관 의견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기획예산처는 기금 설치 목적이 감염병 대응 자원확보이고 예비비와 기능 중복으로 코로나 시 예비비로 충분히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별도 기금 신설 실익이 낮으며, 「국가재정법」⁶⁾상 기금 신설 요건 미충족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활용이 대규모 자금지원이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고,

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부담금의 징수·사용목적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와 국내 감염병 대응 간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 출국자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한 것은 현재의 부담금 정당화 요건(집단적 동질성, 집단적 책임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외교부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은 국민부담금 완화 등을 이유로 2025. 1. 1.부터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사실상 복원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출국납부금 환급 등)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국제질병퇴치기금 후속조치 예산 2026년 반영)에서 동일 성격의 기금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